

『제13회 해운대빛축제』 행사대행 용역 과업내용서

2026. 5.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I.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 가. 체류형 야간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 겨울 해운대를 따뜻하고 감성적인 공간 연출과 각종 이벤트로 방문객 체류 시간을 늘려 소비 유도해 비수기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나. 관광도시 위상 제고 및 차별화된 해운대빛축제 정체성 확립
 - 해운대 해수욕장의 천혜의 자연경관과 도심 야경이 어우러진 독창적인 빛 연출로 ‘겨울 야경 힐링 명소’ 이미지 각인

2. 추진 방향

- 가. ‘연말연시 소망 기원 성지’ 라는 해운대만의 정체성 확립
 - 연말연시 해돋이 명소인 해운대의 특성을 살려, 단순히 빛 시설물을 구경하는 차원을 넘어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소망을 비는 스토리텔링 중심의 공간 정의
- 나. 테마(자유)를 관통하는 공간별 감성 전시 및 스토리텔링 연출
 - 제안사는 시대적 트렌드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자유롭게 테마를 설정 하되, 단순 빛 조형물 전시가 아닌 스토리가 있는 공간으로 구성
 - 구남로는 상권 연계와 보행자 안전을, 해수욕장은 밤바다와 도심 야경이 조화되는 감성 해변 연출
- 다. 체험형 인터랙티브 및 미디어아트 등을 활용한 핵심 콘텐츠 제시
 - 방문객의 행동, 소리 등에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기술과 미디어아트, 레이저쇼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방문객 참여 및 현장 체류 시간 극대화
- 라. 공연과 빛이 결합된 프로그램 및 확산형 콘텐츠 제시
 - 빛 콘텐츠와 어우러지는 시기별 상설 공연·이벤트를 통해 축제 활기를 더하고 온·오프라인에서 자발적인 공유와 확산이 용이한 ‘인생샷’ 스팟 및 홍보 콘텐츠 제시
- 마. 지역 상권 및 인근 관광 상품(명소)를 연계한 상생 협력 프로그램 제안

3. 용역 개요

가. 용역명: 제13회 해운대빛축제 행사대행 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일 ~ 2027.1.31.(철거기간 포함)

다. 과업범위

- 1) 축제기간: 2026.11.28.(토) ~ 2027.1.10.(일) ▶ 44일간(6주)
- 2) 체험 등 부대 행사: 금·토·일 18:00 ~ 21:00
- 3) 공간적 범위: 구남로 ~ 해운대해수욕장(이벤트 광장 포함)



※ 기간 및 구간은 내부 사정(협의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3) 내용적 범위

- 제13회 해운대빛축제 총괄 기획 및 세부 실행 계획 수립
- 제13회 해운대빛축제 행사장 조성 및 연출
- 제13회 해운대빛축제 현장 운영 및 안전관리
- 제13회 해운대빛축제 사후관리 등 기타 사항
 - ▶ 하도급·협력 업체, 근로자 공정거래 및 상생 협력
 - ▶ 착수·중간·결과 보고 및 평가보고회(자료 작성 포함) 참석 등

4) 세부 추진일정

협상·계약	제작·설치	운영·점검	축제 기간	원상복구	평가보고회
'26.6. ~ 8.	'26.9 ~ 11.	'26.11.16.(월) ~ 11.27.(금) (2주)	'26.11.28(토) ~ '27.1.10.(일)(44일)	'27.1.11. ~ 1. 31.	'27. 2월 중 개최

라. 대행예산: 금725,000,000원(금칠억이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전기 인입 공사 별도 발주 예정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II. 과업 세부 내용

1. 축제 총괄 기획 및 세부 실행 계획 수립

가. 제13회 해운대빛축제 기본·실행 계획 수립

- 1) 축제 목적, 추진 방향을 고려해 주제·컨셉트·슬로건·스토리텔링 개발 및 핵심 추진 전략을 반영한 총괄 기본 계획 수립
 - 키비주얼 개발해 포스터, 홍보물 등에 통일된 디자인 적용

- 2) 구남로와 해수욕장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공간별 컨셉트에 따른 공간 배치 계획 및 독창적인 빛 조형(시설)물 전시 연출 제안

- 행사 주제, 슬로건, 공간별 세부 주제 네이밍 작업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분석과 자문을 통해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는 행사 브랜딩을 추진한다.
- 연출·기획 과정에서 제작한 모든 결과물(슬로건, 조형물 디자인, 포스터 디자인 등)은 타인의 결과물을 모방하거나 도용한 것이 아니고, 지적재산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고, 정치·종교 등 이념과 관련한 내용을 담지 않아야 하며, 사회 통념, 일반 상식에 부합하며, 사회계층간 혐오·갈등을 조장하지 않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 축제 종료 이후에도 이를 위반한 내용이 발견되면 이를 소명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법률 자문, 소명자료 제출 등) 해당 분쟁 처리를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조형물은 신규 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사 자체 보유, 협업 파트너사 전시, 예술 작가 작품 임대, 기타 임대로 구분되며 제안서에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최신기술을 활용한 몰입형·디지털 킬러 콘텐츠 필수 제안

- 백사장, 조형물을 활용한 실감형·몰입형 콘텐츠 제시

※ 협상 및 축제위원회 심의,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등 축제 운영 과정에 사업 책임자가 성실히 참여하고, 발주처 요청시 사업 제안 내용을 설명하고, 세부 운영 계획에 반영

※ 기타 필요한 업무는 발주처와 협의 후 수행하며, 프로그램 세부 내용은 해운대구와 상호 협의 후 조정

4) 축제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객관적 관광객 유치 목표 설정 및 달성 전략 제안

- 사전 홍보 영상 제작, 키비주얼을 활용한 포스터, 리플렛, 현수막 등 제작·홍보

- 외국인, 타지역 관광객 유치 방안 제안

5) 축제 운영, 안전 관리 계획 등 세부 실행 계획 수립 등

2. 행사장 조성 및 연출 ☞ 제안서에 시설(조형물) 제작 소요 예산 기재

가. 구역별 공간 조성 및 연출 방향

- 1) 주제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체화하여 구간별 시설물 및 프로그램에 적용함으로써 관람객이 주제를 쉽게 이해·체감 할 수 있는 상세 연출 제안

【구남로】

-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1안 이상) 필수
- 주제와 구남로 공간 특성을 반영한 핵심 조형물(1안 이상) 필수
- 상권 연계 방안 및 보행 안전 고려한 공간 연출
- 빌딩풍을 고려하고, 포토존이 될 수 있는 디자인(안) 제안
- ※ 구남로 보도블록 훼손 최소화 방안 및 분수 구간 시설물 미설치 반영

【해수욕장(이벤트광장 포함)】

- 주제와 해수욕장 공간 특성을 반영한 핵심 대형 조형물(1안 이상) 필수
 - 미디어 아트, 레이저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공간 연출로 축제를 대표하는 킬러 콘텐츠 필수 제안
 - 소망을 기원하는 콘텐츠(1안 이상) 필수
 -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이색 쉼터 조성
 - 2027년 정미년 상징 조형물(1안 이상) 필수(해운대해수욕장)
- 2) 관람객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및 시기별 이벤트 필수 제안
 - 형식적인 체험 프로그램 지양, 주제를 반영한 임팩트 있는 체험 프로그램 필요
 - 개막식, 주말,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시기별 상설 이벤트 운영
 - 3) 종합안내소, 의료부스, 안내 사인물 등 관람 편의 증대 방안 제안
 - ※ 종합안내소에는 외국어 가능자 배치, 조형물 배치 시 행정안전부 보행 안전법을 준수하며 관람객 동선을 고려하여 배치 교통 약자 고려 필수)
 - ※ 방문객 체류시간 증가를 위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자유롭게 제안

다. 시설물 제작 및 설치

1) 조형(시설)물 제작 계획 수립 및 현장 실사

- 사전에 세부 계획을 발주처에 제출하되 다음의 내용 반드시 포함
 - ▶ 시설물 디자인, 규격, 소재, 색상, 전력사용량, 시공·연출 방법, 유지보수 방안 등 기초정보를 포함한 제작·설치 공정 계획
 - ▶ 개막일 2주 전까지 모든 빛 조형물 및 기타 시설물 설치 완료 및 점검
 - ☞ 과업수행자는 1주일 단위로 제작 및 진행 상황을 발주처에 보고
- 시설물 제작은 ‘현장 실측’을 기반으로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해 설계 및 제작 필수(현장 실측 관련 발주처 보고)

2) 설치 시 전기 시공사와 적극적인 소통 및 협업 추진

3) 시설물(조형)물 제작, 운반, 설치, 전시, 철거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 및 파손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4) 전시 중에 고장·파손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에 보고 및 보수 발생 후 24시간 이내 원상 복구 요망(발주처와 세부 일정 협의 가능)

※ 빛 조형물의 하자 발생 시 보수 및 하자 발생 조형물의 대체 방안 마련

5) 주간에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위치, 크기, 재료 및 컬러 선정

- 주야간 포토존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야간 사진촬영 시 피사체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조성

6) 조형물은 시공 및 유지 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이며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방안으로 구성

7) 강풍, 폭우 등 기상 변화에 대한 대책을 고려해 설치·운영

8) 행사장 내 모든 시설물은 설치 후 철거를 원칙으로 함

라. 관람 환경 조성

1) 관람데크 설치

- 백사장 내 주요 관람 동선에 폭 1.8m 이상으로 데크 설치
- 굽이 박히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로 제작
- 휠체어 등이 진입 가능하도록 호안도로와 관람 데크 사이 연결 경사로 설치

2) 축제 안내물 제작

- 행사장 안내, 안전·질서유지, 포스터, 리플렛 등 행사 관련 사인물

및 현수막 등 일체 제작·설치

※ 모든 제작물은 **야간용으로 제작**하며 가독성·가시성이 높고 축제 키비주얼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외국인 관광객의 관람 편의성 제고를 위해 **다국어(한국어, 영어)**로 제작해야 함

※ 강풍, 폭설 등으로 인한 사인물 파손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 장치 필수**

※ 축제 기간 중 현장 총괄 담당자(안전책임자) 연락처 기재된 현수막 필수 포함

마. 개막식, 주말,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다양한 규모의 행사 개최

1) 개막을 축하하는 공연을 기획하고 점등 퍼포먼스 등 이벤트 구성

- 인근 호텔·주거지 소음 민원, 대규모 인파 등 고려해 위치 선정

2) 주말,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시기별 적합한 마켓·공연 등 제안

- 행사 규모, 날짜, 시간대를 포함하여 적합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제안

※ 개막식, 상설 공연 무대 등 배치도 및 상세 운영 계획 제안

바. 전기 관련 분야

1) 전기작업자는 전기기사 등 관련 자격증 및 경력 보유자여야 하며, 정전·누전 등으로 인한 사고에 신속 대응

2) 전기 관련 제품은 전기 용량과 규격, 방수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3) 바닥에 놓이는 전선은 보호캡을 하고, 백사장은 모래에 매설해 걸림 사고 예방

4) 계약기간 동안 행사장 내 발생하는 전기 사용료는 과업수행자가 지급함

3. 행사장 현장 운영 및 안전관리

가. 빛 조형물 전시 운영

1) 전시기간: 2026.11.28.(토) ~ 2027.1.10.(일)

2) 점등시간: 18:00 ~ 23:00 ※ 단, 금·토·일 24:00까지 운영

나. 체험·이벤트 운영

1) 운영기간: 2026.11.28.(토) ~ 2027.1.10.(일) 금·토·일

2) 운영시간: 18:00 ~ 21:00

※ 기간·시간 등 세부 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로 변경될 수 있음

다. 종합안내소 및 각종 부스 설치·운영

- 1) 장소: 해운대해수욕장 이벤트광장 등
- 2) 종류: 종합안내소·의료부스 필수 설치, 체험 부스 등
- 3) 관람객 응대를 위한 외국어 가능자 및 다국어(한·영) 리플렛 배치
- 4) 부스별 안내 현수막, 전기시설, 조명, 의자, 응급처치 물품 등 필수 운영 비품 등을 충분히 비치하여 설치
- 5) 행사 안전·운영요원 대기 공간 마련
- 6) 행사 부스는 견고하게 시공해야 하며, 설치 장소 노면 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함
- 7) 부스는 깔끔한 상태의 재질과 색상 등 마감이 통일된 것 사용

라. 축제 관리 인력

- 1) 원활한 축제 현장 운영을 위한 인력 운영 계획 수립
 - 세부 인력 운영계획 제출 시 목표 모집 인원, 모집 방안, 교육 방안 제시
 - 운영인력 간 역할(책임) 구분이 명확해야 하며, 다음의 인력은 필수 선정할 것

구분	역할 구분	비고
현장 안내 요원	- 축제 현장 세팅, 관람객 응대, 민원 처리 등 현장 운영 일체	행사 운영, 안전관리 포함
경호 요원	- 운영인력 보호, 현장 통제, 시설/설비 보호 등	개막식 등 인파 밀집 시
관리 요원	- 현장에서 빛 조형물, 시설, 장비 등의 기술 관리를 할 수 있는 상주 관리자 - 전기 관련 이슈 발생 시 전기 인입공사 시공 사와 소통을 통한 즉시 조치	빛 조형물, 시설, 장비 등 기술 관리 전담 인력 구성

※ 소속 근로자, 단기 근로자,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현장 운영 인력 모두 포함

2) 축제 운영·관리 단기 근로자·자원봉사자 사전교육

- 사전 인력 교육은 법정 교육 요건에 부합하는 횟수, 교육 시간, 내용 등을 준수해 추진되어야 하며, 교육 현장은 사진 또는 영상으로 기록하여야 함
- 비상시 운영계획, 역할 분담, 친절 교육(민원 발생 사례 중심) 진행이 명확해야 함

※ 교육 일정, 세부 내용, 프로그램 등은 명확하게 문서로 정리되어 유인물 혹은 책자 형태로 운영 인력들에게 배부되어야 하며, 이는 사전에 발주기관에 공유되어야 함

4. 안전관리

가. 관람 인파 관리 대책 및 동선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1) 행사구간 내 적정 관람객 수 산정 방식 및 적정 운영방안 수립
※ 행정안전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준수
- 2) 행사장 최대 동시 수용인원 산정 통한 수용대책 마련 및 행사 중 수용 인원 초과 시에 대한 대책 수립, 입·출구 통제 대책 마련/실시
- 3) 관람객 밀집 지역과 전시물 주위에 안전장치(차단봉, 펜스 등) 설치·관리
- 4) 조형물 위치, 행사장 수용인원, 행사장 공간 조성 등을 고려한 관람 동선 계획
- 5)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나.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

- 1) 과업 수행 전 과정 중,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및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공연법」 등을 비롯한 안전관리 규정·지침 준수
- 2) 중대재해 예방 능력 확보를 위해 전체 규격(일반관리비와 부가세를 포함한 도급 금액 전체)의 70%의 1.59% 이상을 “안전관리비(직접경비 공중-안전웬스 등 시설 및 소모품, 보험료 등)”에 포함하여 산출내역서 작성. 단, 행사장 안전관리 인력(경비원, 난내요원 등) 인건비는 이와 별도로 산출내역서에 포함해야 함.

※ 안전관리비로 편성된 항목에 한해 준공 시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함

- 3) 개막일 30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 수립·보고·심의 통과하고,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개막 이후라도 수정 후 재승인
- 4) 안전 관련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각종 인허가 및 협조체계 구축
- 5) 대인, 대물 및 행사 안전사고 관련 보험 가입(관람객, 운영인력 포함)
- 보험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계약 종료일로 함

다. 안전 설비·비품 확보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1)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 계획

- 자연재해(강풍, 강우, 지진 등), 사회재난에 대비한 비상 피난 계획 마련
- 초동단계, 응급 구호단계, 비상 단계별 조치계획
- 2) 행사 운영 안전대책 매뉴얼 작성 및 보고, 운영인력 대상 배포 및 안전교육 실시
- 3) 비상시 유관기관 협력시스템 구축(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등)
 - ※ 유관기관 담당자 연락 정보의 현행화 필수

라. 우천 등 천재지변 시 대책에 관한 사항

- 1) 우천 시 대처 방안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
- 2) 천재지변과 전쟁, 지진, 폭동, 시위 등 불가항력에 의해 행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음. 이 경우 선 지출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항목(연예인 섭외비용,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하여야 함

5. 공정거래 및 기타사항

가. 공정거래

- 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하도급(발주처 승인 필요)·협력업체, 근로자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체결한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함
- 2) 과업수행자는 선금 신청 시, 본 용역에 참여하는 주요 협력업체별 선금 배분 계획서나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을 제출해야 하며, 선금 수령 후 기한 내 근로자, 하도급·협력업체에 지급을 완료하고 완료일로부터 후 7일 이내에 대금 지급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
- 3) 과업수행자는 준공금 청구 시 본 용역에 참여한 근로자 임금 및 하도급·협력업체 대금 지급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 임금 및 하도급·협력업체 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미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지급을 유예하거나 지급을 중단 할 수 있음

※ 단, 미지급 내역에 대한 지급 예정 약속서(근로자, 협력업체 등 동의 포함)

제출 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

- 4) 정당한 이유없이 1)~3) 사항을 위반하여 임금·대금을 체불함으로써 민원 발생, 사회적 물의 야기, 용역 수행 중단·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발주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또한 과업수행자는 부정당업자 지정 등 행정적 불이익 조치를 감수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 5) 발주처는 임금 및 대금 체불 예방을 위해 필요시 협력업체에 직접 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 나. 기타사항
- 1) 협상 단계부터 실행계획 수립 시까지 실측 배치도면 요구 시 제출
 - 2) 발주처의 샘플(견본) 테스트 요구 시 시연
 - 3) 협찬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축제 관련 회의자료 제공 및 보고
 - 5) 예산집행 및 정산 등 회계처리
 - 예산집행 내역을 정산하여 제출하고, 예산집행에 부정이나 과다 계상된 금액이 있을 경우 감액 지급
 - 6) 기타 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추가 사항
 - 지역 주민·상인, 관련 위원회 등에서 수립된 의견은 예산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 하에 반영
 - 7) 그 외 필요한 시설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Ⅲ.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지침

-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가 의도하는 과업 목적 및 방향에 맞게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5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고, 과업 착수 시 착수계와 함께 세부 예정 공정표, 참여인력 총괄 현황

(조직도, 부문별 책임·실무자, 업무분장, 비상연락망, 보안각서) 등을 제출하여 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축제, 디자인, 전기 설비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와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필요한 전담 인력을 지정·운영해야 하고, 전담 인력 교체 요구 시에는 이에 즉각 응해야 한다.
- 마. 구의 별도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 과업의 범위는 본 과업내용서 및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제안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며, 구와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 및 변경할 수 있다.
- 바. 구는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과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과업 추진 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과업내용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추가로 과업을 지시할 수 있다.
- 사.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제반 업무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하도급 추진 시 구청과 반드시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아.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관해서는 구와 협의 하여야 하며,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구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자.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구가 제안하는 의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및 반영하여야 한다.

2. 책임 및 보완

-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추진 시 제반 관련 법규, 조례, 지침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나. 본 과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으며, 다음 사항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행사 참가자 및 관계자의 편의 및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다. 본 과업 수행 중에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하여야 한다.
- 라.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 및 디자인 등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으로 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에 수행했던 유사 용역에서 고안되었던 성과물은 본 과업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상기 내용 위반으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 있다
- 마. 과업수행자는 구의 승인 없이 과업의 진행 과정 및 수행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활용할 수 없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바.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결과물의 소유권, 판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 제반 권리 사항은 구에 귀속된다.
- 사. 구에서 제공한 각종 자료를 이용하여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 제반 권리 사항을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 아. 과업 기간에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문서화하여 정리·이전하여야 한다.

3. 기타 사항

-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2)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과업수행 업체의 과업 수행능력 및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대행업체 선정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수행내용, 회사 소개 내용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4)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5)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구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6) 전염병 확산 등 다른 정부 차원의 축제 자제 또는 중지 지침이 내려올 경우
 - 7)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 나. 위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구는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일체 반환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다.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상호 협의 시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정산할 수 있다.
- 1) 과업 물량이 증감이 발생할 경우
 - 2)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에도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중앙 및 지방정부 감사기관의 지적에 따른 변상요구에 대하여는 구에서 정하는 기일 내에 환불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마.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전반에 걸쳐 발주처의 명예와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자체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차기 사업 입찰 시 감점 요인으로 반영하거나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IV. 과업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 보고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구의 요구가 있을 시 과업수행자는 조건 없이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가.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필요시 PPT 자료 활용 발표)
- 나. 주간보고: 수행실적, 다음주 계획, 문제점 등 보고
- 다. 변경보고: 업무의 수행방법 및 산출물의 변경 시 변경보고
- 라. 위험관리보고: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 시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방안

논의 및 처리 후 보고

- 마. 완료보고: 과업종료 후 **운영평가 보고서(PPT)** 작성 및 **평가보고회 참석·발표**
 - 평가보고회 일정은 별도 통보
- 바. 기타보고: 해운대구 요청 시, 서면 및 대면 보고

2. 리허설 진행

- 가. 시범운영 기간 전까지 모든 시설물을 설치하고 문제점 발견 시 대책 마련 및 보완 <시범운영 '26. 11. 16.(월) ~ 11.27.(금)>
- 나. 개막일 행사 개최 1일 전 사전 리허설 진행
- 다. 개막일 외 행사 개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 실전 리허설 진행

3. 성과품 제출

- 가. 제출기간: 준공서류 제출 시
- 나. 성과품
 - 1) 축제 운영 결과보고서(PPT) 작성 및 발표
 - 2) 행사 진행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 및 영상 파일
 - 3) 사업비 정산 내역 및 협찬금 사용 내역
 - 5) 사진첩 2부(1부당 최소 20면 이상), 기록영상·사진자료 USB